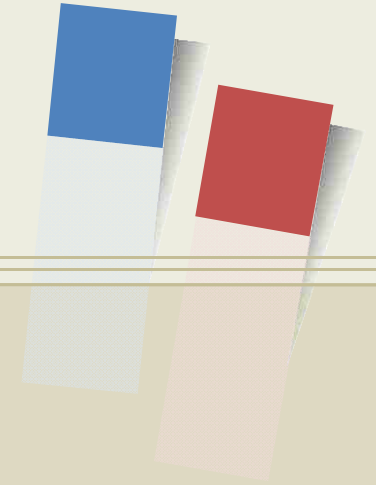


2013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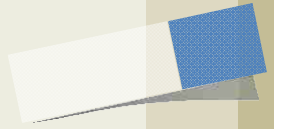


서울시의회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

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



최종보고 내용



I. 서론

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2. 연구의 범위 및 방법

II. 이론적 배경:

1. 국제행위자의 복합네트워킹
2. 외교전략의 새로운 권력구성 경향: 소프트파워를 중심으로
3. 공공외교 4. 의원외교 5. 지방외교
6. 서울시의원 공공외교의 이론적 함의

III. 지방의원 공공외교 국내외 사례

1. 해외사례
2. 국내사례

IV. 서울시 의원외교 지원 법제도와 의원외교 개관:

1. 서울시 의원외교 지원 법제도
2. 서울시 의원외교 개관

V. 서울시 의원공공외교 한계점과 발전방안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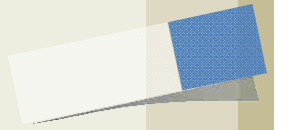
1. 서울시 의원공공외교의 한계점
2. 서울시 의원공공외교의 발전방안

VI. 결론 : 요약 및 향후과제



I. 서론 : 연구의 목적 및 방법

- 세계화의 심화와 민주화 및 정보화의 확산으로 국가의 외교가 정부 대 정부의 전통적 외교에서 공공외교로의 변화
 - 지역적 측면의 지방외교, 행위자 측면의 의원외교 및 민간외교의 중요성 부각
 - 외교대상 측면의 대정부 외교를 탈피한 공공외교가 부각 및 강조
- 외교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새로운 외교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도입이 필요
 - 지방외교 측면에서의 2002년 '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' 제정
 - 공공외교 측면에서의 2007년 외교부 문화외교국 신설, 국제교류재단의 활동강화,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및 스포츠 교류활동 강화
 - 의원외교 측면에서의 국회사무처 국제국 확대 노력, 2011년 G20 국회의장회의 개최
-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합한 지방의원의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필요
 - 이론적 논의의 부재 및 법제도적 기반구조가 전무하고, 해외출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상호 의회 방문 등 국제교류협력 중심의 공공외교 활동이 한계
 - 서울시나 경상북도의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우리나라 지방의원 공공외교의 대표적 사례
 - 법제도적 측면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도입이 시급
- 이 연구의 목표는 새로운 외교패러다임에 부합한 지방의원의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을 찾는 데 있으며, 이를 위해 지방의원의 공공외교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, 지방의원 공공외교의 국내외 사례, 서울시 의원외교 현황 및 공공외교 사례를 분석한다.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서울시의원 공공외교의 한계점을 도출하고, 이를 토대로 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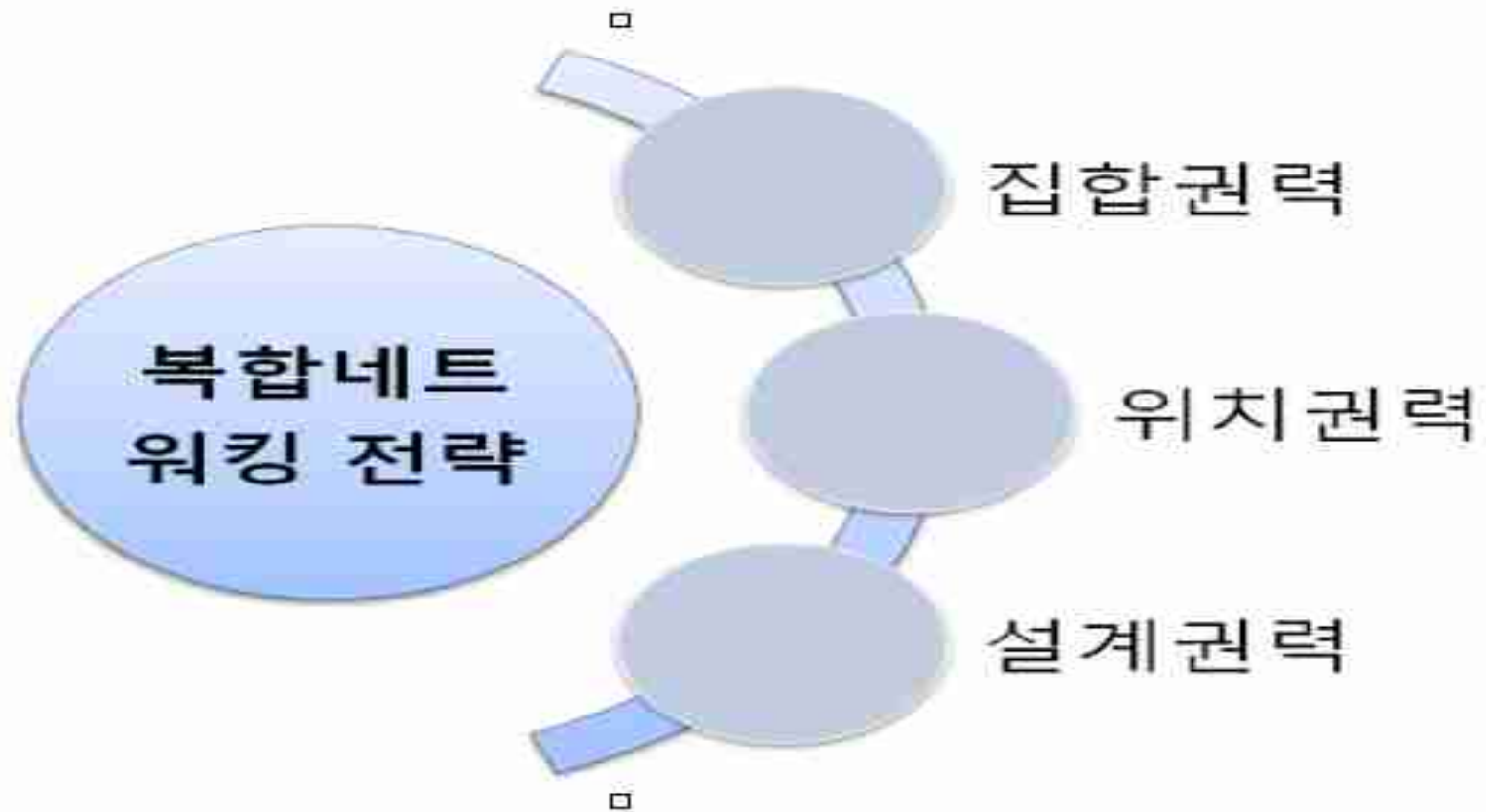
II. 이론적 배경

1. 국제행위자의 복합네트워킹
2. 외교전략의 새로운 권력구성 경향 : 소프트파워를 중심으로
3. 공공외교
4. 의원외교
5. 지방외교
6. 서울시의원 공공외교의 이론적 함의



1. 국제행위자의 복합네트워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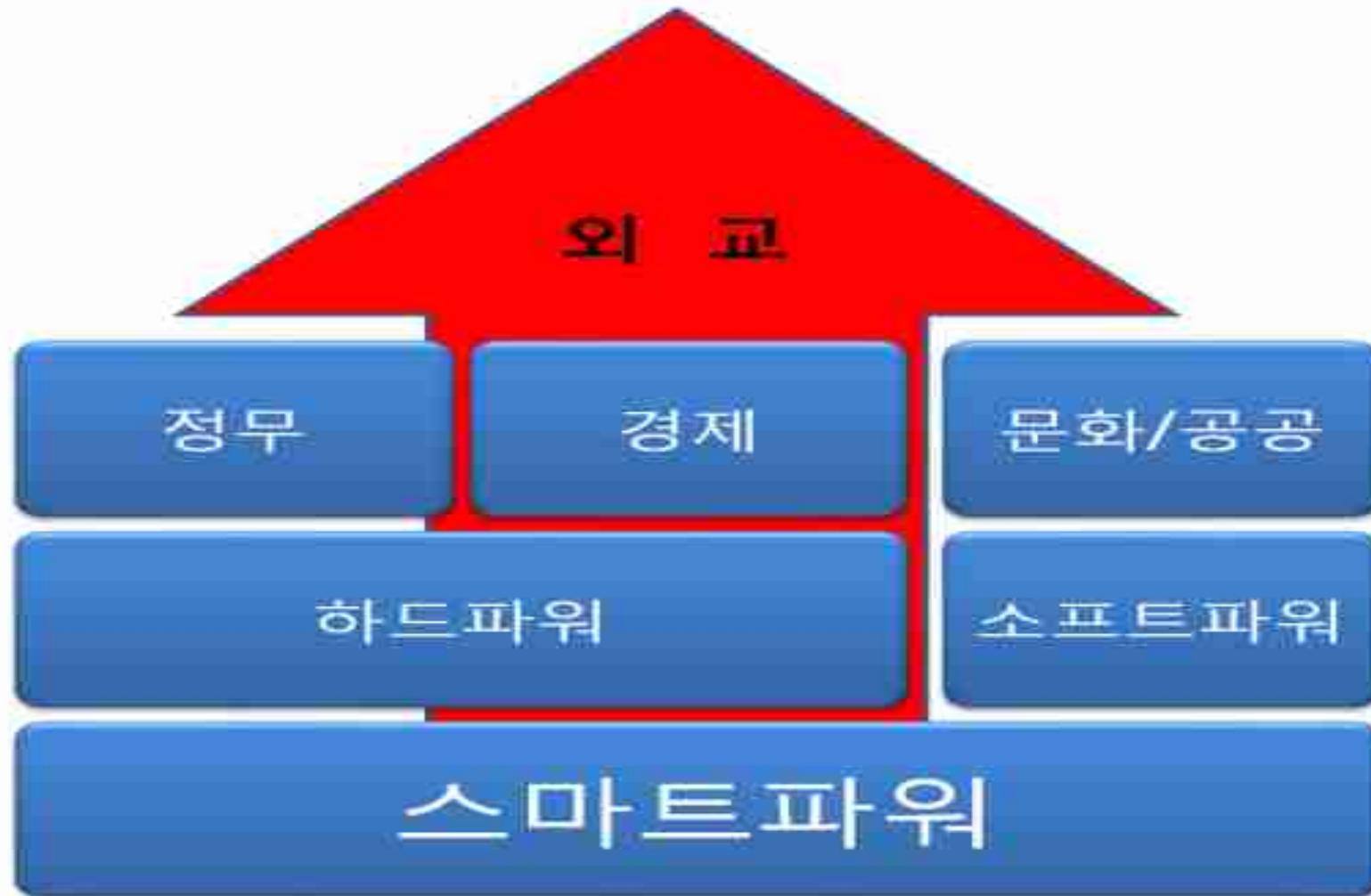
복합네트워킹의 전략 구성요소



자료: 김태균(2012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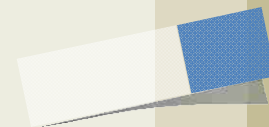
2. 외교전략의 새로운 권력구성 경향 : 소프트파워를 중심으로

외교의 유형과 공공외교





3. 공공외교 (Public diplomacy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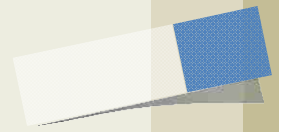
공공외교의 주체 및 관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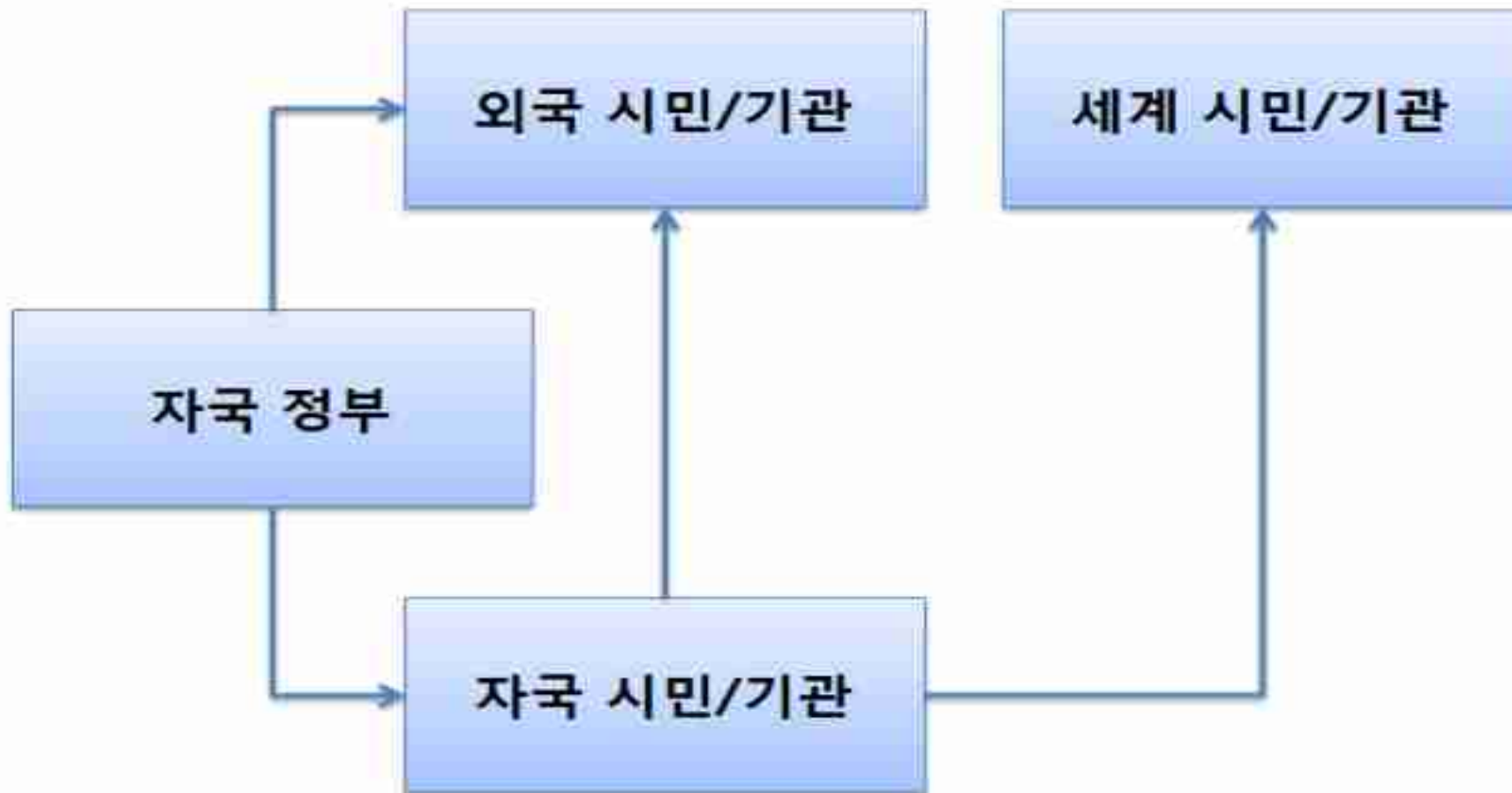
자료: 마영삼(2011: 4).



3. 공공외교 (Public diplomacy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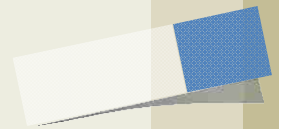
공공외교의 주체 및 관계



자료: 마영삼(2011: 4).



3. 공공외교 (Public diplomacy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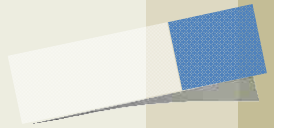


공공외교와 신공공외교 비교

	전통외교	20세기 공공외교	21세기 <u>신공공외교</u>
주체	정부	정부	민간주체의 다양화 정부
대상	정부	민간, 정부	민간, 정부
수단 (자원과 자산)	하드파워	소프트파워	소프트파워
대체	전통적 <u>정부간</u> 협상과 대화	PR, 캠페인	디지털 대체 등 다양화
관계 유형	수평적(정부간)	수직적/일방적	수평적/쌍방향적 교류 및 대화



4. 의원외교(Parliamentary diplomacy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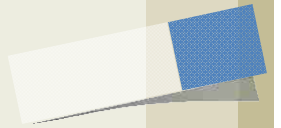


□ 공공외교의 한 구성요소로서 의원외교의 외교적 기여도 (Robertson, 2006)

- 의원들은 방문외교를 통하여 상대국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.
- 의원들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자국 국민의 의사 및 정서를 상대국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외교관들에 비해 신뢰감이 높다.
- 정부의 외교관들은 행정부 정책결정과정의 제약을 받고 있는 반면, 의원들은 동일한 제약에서 벗어나 조율할 수 있는 유연적인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국제문제에 대하여 그 대응방식이 경직되어 있지 않다.
- 정부의 외교관보다 대상국 및 자국의 비정부기관(NGO 등)과 보다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쉽게 확보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단체와의 연계성을 형성할 수 있다.



4. 의원외교(Parliamentary diplomacy)



- 의원외교의 유형 (유준상, 2006: 56-61; 권정신, 1973: 7-9)

첫째, '탐색외교(pilot-study diplomacy)'

둘째, '설득외교(persuasive diplomacy)'

셋째, '점검외교(checking diplomacy)'

넷째, '환경조성외교(environmental-producing diplomacy)'

다섯째, '가교외교(bridge diplomacy)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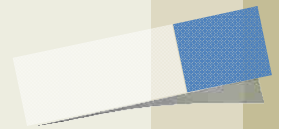


5. 지방외교 (local diplomacy)

-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일종의 외교적 행위인 세계 각국의 도시와 지방자치단체들과의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들을 '지방외교 (local diplomacy)'라고 지칭하고, 중앙단위의 공공외교를 보완하거나 때로는 독자적인 외교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트랙(multi-track) 공공외교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(고경민·황경수·홍민지, 2008).
- 지방외교는 두 국가 이상의 지방 간 교류와 협력으로서 국가체제가 아닌 지방차원이면서 민간단체나 지방의회를 통한 비정치적·비군사적 교류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주변 정세의 영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교류와 협력의 지속성과 안정성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(양현모 외, 2007: 12).
- 지방외교의 독자적인 민간중심의 특징은 경우에 따라 중앙정부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, 그 성격상 지방외교는 기본적으로 지역정부 간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미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(장세길, 2008: 467; 박경국, 2003: 82).



III. 지방의원 공공외교 국내외 사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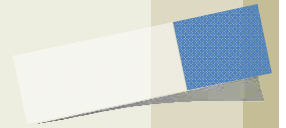
1. 해외사례

가. 네덜란드 의원공공외교 사례





III. 지방의원 공공외교 국내외 사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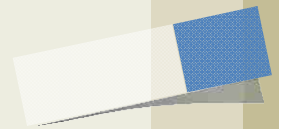
1. 해외사례

나. 캐나다의 의회 공공외교 사례: 포괄적 전방위 의원외교

유형	사례
국가공공외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캐나다-미국 의회그룹(Canada-US Inter-parliamentary Group): 1959년 설립 ◆ 캐나다-프랑스 의회협회(Canada-France Parliamentary Association): 1969년 설립 ◆ 캐나다-일본 의회그룹(Canada-Japan Parliamentary Group): 역사적협정국 의회그룹 내부에 설치 ◆ 캐나다-영국 의회협회(Canada-UK Parliamentary Association): 1999년 설립 ◆ 캐나다-중국 협의회(Canada-China Legislative Association): 1999년 설립
국제단체협회(Inter-Parliamentary Association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국제의원연합(Inter-Parliamentary Union) ◆ 상업의회의협회(Commercial Parliamentary Association) ◆ 캐나다-NATO 의회협회(Canada-NATO Parliamentary Association) ◆ 프랑스프랑스 의회협회(Assemblée parlementaire de la francophonie) ◆ 캐나다-유럽 의회협회(Canada-Europe Parliamentary Association) ◆ 미국인 국제의회 포럼(Inter-Parliamentary Forum for the Americas)
의원친선단체(Friendship Groups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캐나다-아프리카 의회그룹(Canada-Africa Parliamentary Group) ◆ 캐나다-앨버타 친선그룹(Canada-Alberta Friendship Group) ◆ 캐나다-아르헨티나 친선그룹(Canada-Argentina Friendship Group) ◆ 캐나다-아르헨티나 친선그룹(Canada-Armenia Friendship Group) ◆ 캐나다-벨기에 친선그룹(Canada-Belgium Friendship Group) ◆ 캐나다-벨기에 방음회교그룹(Canada-Belgium Inter-parliamentary Group) ◆ 캐나다-브라질 친선그룹(Canada-Brazil Inter-parliamentary Group) ◆ 캐나다-칠레 친선그룹(Canada-Chile Friendship Group) ◆ 캐나다-크로아티아/보스니아/헤르체고비나 친선그룹(Canada-Croatia/Bosnia/Herzegovina Friendship Group) ◆ 캐나다-세인트루이스 친선그룹(Canada-Syria Friendship Group) ◆ 글로벌 행동은 하나(One Global Action)(Canada, Parliamentarians for Global Action) ◆ 캐나다-그리스 친선그룹(Canada-Greece Friendship Group) ◆ 캐나다-홍콩 친선그룹(Canada-Hong Kong Friendship Group) ◆ 캐나다-헝가리 친선그룹(Canada-Hungary Friendship Group) ◆ 캐나다-아이슬란드 친선그룹(Canada-Iceland Friendship Group) ◆ 캐나다-일본 친선그룹(Canada-Japan Friendship Group) ◆ 캐나다-한국 친선그룹(Canada-Korea Friendship Group) ◆ 캐나다-레바논 친선그룹(Canada-Lebanon Friendship Group) ◆ 캐나다-말라카 친선그룹(Canada-Malaysia Friendship Group) ◆ 캐나다-멕시코 친선그룹(Canada-Mexico Friendship Group) ◆ 캐나다-모로코 친선그룹(Canada-Morocco Parliamentary Group) ◆ 캐나다-폴란드 친선그룹(Canada-Poland Friendship Group) ◆ 캐나다-포르투갈 친선그룹(Canada-Portugal Friendship Group) ◆ 캐나다-루마니아 상호의회 그룹(Canada-Romania Inter-Parliamentary Group) ◆ 캐나다-러시아 친선 그룹(Canada-Russia Parliamentary Group) ◆ 캐나다-우크라이나 친선 그룹(Canada-Ukraine Parliamentary Group) ◆ 캐나다-시리아 친선 그룹(Canada-Syria Parliamentary Group) ◆ 캐나다-태완 친선그룹(Canada-Taiwan Friendship Group) ◆ 캐나다-우즈베키스탄 친선그룹(Canada-Uzbekistan Friendship Group) ◆ UNESCO를 위한 친선그룹(Friendship Group of Parliamentarians for UNESCO)



III. 지방의원 공공외교 국내외 사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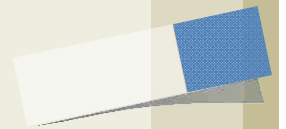
2. 국내사례

가. 국내 지방의회 의원외교 현황

- 국내지방의원 외교활동에 대한 법적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38조의 제10항에 따름



III. 지방의원 공공외교 국내외 사례



2. 국내사례

나. 부문별 국내 지방의원 공공외교 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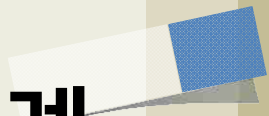
- 안보부문 지방의원 공공외교 :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
- 국내협력체계 구축
- 국내외 일반 국민 대상 활동
- 통상부문 지방의원 공공외교 : 경기도 2008년 4월 '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리더십 프로그램' 및 2012년 4월 폴란드 현지 국내 기업인 간담회
- 문화부문 지방의원 공공외교 : 2012년 8월 경기도 여성의원 북경언어 대학교 초청방문, 2012년 8월 일본 여성 인권 NGO 초청 등
- 지식 및 정보교류 부문 의원공공외교 : 2012년 4월 미국 하와이 '다학제간 지적교류회의'참석, 2010년 10월 '제4회 유라시아 사회복지 포럼' 공동주최

IV. 서울시 의원외교 개관과 공공외교 사례

1. 서울시 의원외교 관련 법-제도

-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해외활동 등에 관한 규칙
-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정
- 서울특별시의회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
-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

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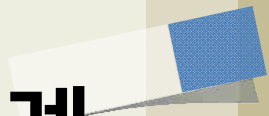


IV. 서울시 의원외교 개관과 공공외교 사례

2. 서울시 의원외교 현황 - 외교대상지역 및 국가

최근 서울시의회 국내외 의원외교 현황(2002년~2013년 10월 30일)

대분류		건수	비중(%)	국가
구분	세분류			
국외(30)	국제회의(연설, 강연)참가	5	16.67	베트남, 카자흐스탄, 일본, 중국
	방문접견(간담회)	3	10.00	일본, 러시아
	초청방문	7	23.33	미국, 일본, 인도네시아, 몽골, 터키, 호주(뉴질랜드)
	현장시찰	8	26.67	독일, 덴마크외 2개국, 일본, 호주(뉴질랜드), 미국, 덴마크, 중국,
	행사참여	4	13.33	일본, 프랑스, 중국, 이탈리아
	기타	3	10.00	-
소계(A)		30	100	-
국내(56)	국제회의(연설, 강연)참가	8	9.30	-
	방문접견(간담회)	32	37.21	-
	현장시찰	1	1.16	-
	행사참여	12	13.95	-
	기자회견(독도)	2	2.33	-
	기타(공로인증)	1	1.16	-
소계(B)		56	100	-
합계(A+B)		86	100	-



IV. 서울시 의원외교 개관과 공공외교 사례

2. 서울시 의원외교 현황 - 서울시의회 의원외교 국가별 현황(2002년~2013년 10월 30일)

		국제회의	방문접견	초청방문	현장시찰	행사참여	기타	합계	비중 (%)
아시아 (19)	베트남	1						1	3.33
	카자흐스탄	1						1	3.33
	일본	2	2	1	2	1		8	26.67
	중국	1			1	1		3	10.00
	인도네시아			2				2	6.67
	몽골			1				1	3.33
	북한						3	3	10.00
유럽 (7)	이탈리아					1		1	3.33
	프랑스					1		1	3.33
	독일				1			1	3.33
	러시아		1					1	3.33
	터키			1				1	3.33
	덴마크				2			2	6.67
미국 (2)	미국			1	1			2	6.67
오세아니아 (2)	호주(뉴질랜드)			1	1			2	6.67
소계 (30)		5	3	7	8	4	3	30	100



V. 서울시 의원외교의 한계점과 발전방안

1. 서울시 의원공공외교의 한계점 (1) – 정책적 측면

- 서울시 의원공공외교에 대한 개념 부재
- 서울시 의원공공외교 정책정립 체계 부재
- 서울시 의원공공외교 범주와 활동 지역, 국가선정기준에 대한 기준 모호
- 중앙정부 특히 외교부 등을 통한 자원마련 노력 부족



V. 서울시 의원외교의 한계점과 발전방안

1. 서울시 의원공공외교의 한계점 (2) - 사업적 측면

- 서울시 의원공공외교 활동이 방문 중심
- 서울시 의회 주최 또는 중앙정부 및 기관 또는 시민단체 등 연계활동 미흡
- SNS 등 공공외교의 다양한 수단 활용 미흡



V. 서울시 의원외교의 한계점과 발전방안

1. 서울시 의원공공외교의 한계점 (3) - 추진기반적 측면

- 서울시 의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부재
- 서울시 의원공공외교 지원조직 부실



V. 서울시 의원외교의 한계점과 발전방안

1. 서울시 의원공공외교의 한계점 (4) - 입법적 측면

- 기존 법정 규정내 지방의원들의 공공외교에 대한 내용 불포함
- 국외방문 활동 대상이 비정부기관을 포함하도록 관련 법정 규정 개정



V. 서울시 의원외교의 한계점과 발전방안

2. 서울시 의원공공외교의 발전방안 (1) – 정책적 측면

- 서울시 의원공공외교에 대한 중장단기 계획 마련
- 서울시 의원외교 정책 방향 수립방법 및 절차 마련
- 서울시 의원외교에 대한 평가 제도 마련
- 지역 및 국가별 전략 마련



V. 서울시 의원외교의 한계점과 발전방안

2. 서울시 의원공공외교의 발전방안 (2) - 사업적 측면

- 국내 공공외교 네트워크 확대
- 국외 다자 네트워크 확대
- 양자간 네트워크 확대
- 사업방식의 다양화 및 다원화



V. 서울시 의원외교의 한계점과 발전방안

2. 서울시 의원공공외교의 발전방안 (3) – 추진기반적 측면

- 의원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: 프로그램 제공 및 연수 기관 설립
- 의원공공외교 지원체계 구축 : 기존조직(의회 사무국) 확대 또는 “국제교류센터”설립



V. 서울시 의원외교의 한계점과 발전방안

2. 서울시 의원공공외교의 발전방안 (4) – 입법적 측면

- '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해외활동 등에 관한 규칙'의 사업영역내 공공 외교 관련 사항 명시
- '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정' 개정을 통한 공식활동 인정 및 의회 차원의 예산 및 정책적 차원의 지원 유도
- 안전행정부의 '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' 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노력
- 외교부 산하 국제교류협력단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



VI. 결론: 요약 및 향후 연구과제

1. 서울시 의원외교의 위상과 내용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.
2. 서울시 의원외교의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방안에 대한 논의가 좀 더 구체화되어야 한다.
3. 서울시 의원외교와 중앙정부 및 서울시 외교와의 연계방안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.
4. 서울시 의원공공외교 추진기반의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.
5. 서울시 의원공공외교 추진기반의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.



보론 - 서울시 의회의 공공외교와 투자유치 활성화

1. 공공외교와 투자유치 활성화의 문제

2. 2013년 상반기 서울시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

3. 서울시 의회의 투자유치활성화 외교활동에 대한 시사점